

의안번호	제 301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12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8년 12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1
----------	-----

제출연월일 : 2008년 12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실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1995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실적이 전무한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관련 법령 정비 및 추가 (안 제1조)
 -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항 및 제6항
 - 주요사업 투자심사 : 지방재정법 제37조
 -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 위원회 기능에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사항 추가 (안 제2조 제2항)
-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장·부위원장 임무 (안 제3조 ~ 안 제5조)
- 회의, 안건배부, 실무위원회, 의견청취 등 (안 제6조 ~ 안 제9조)
-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 (부칙 안 제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제6항 및 제37조에 따른 충청북도 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주요사업의 투자심사
3.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대상사업의 취소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리실장이 된다.
- ③ 위원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수는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담당관)이 된다.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폐지) 「충청북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 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사회기반시설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8인이내의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24, 2002.12.11, 2005.1.27>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1999.5.24>

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투자사업자문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⑤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1>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의 제공 등 주무관청의 원활한 사업시행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평가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③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심의위원회의 운영등) ① ~ ⑦항 생략

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3.2.24>

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2.24>

제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범위)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8>

1.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상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주무관청이 2이상이거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다만, 주무관청이 2이상인 경우로서 주무관청사이에 사업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기타 주무관청 또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